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 5 기

2016년 01월 0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제 4 기

2015년 01월 0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 목 차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1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4
운영성과표 .....	6
자본변동표 .....	8
현금흐름표 .....	9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10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이사회 귀중

2017년 2월 28일

우리는 별첨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재단의 재무제표는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의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 자본변동 및 현금흐름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의 회계규정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기타사항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의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 박준배가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16년 3월 2일자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2번길 25 501(인계동 와이엘빌딩)

TEL:031-243-1300, FAX:031-624-5665

공인회계사 최 형 호 (인)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 (첨부)재 무 제 표

###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 제 5 기

2016년 01월 0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 제 4 기

2015년 01월 0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기 팔달구 행궁로 11(남창동)

(전 화) 031-290-3515

재 무 상 태 표

제 5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 4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단위 : 원)

과 목	제 5(당) 기	제 4(전) 기
자 산		
I. 유동자산	6,422,112,088	5,986,574,523
(1). 당좌자산	6,422,112,088	5,986,574,523
1. 현금및현금성자산	3,078,971,170	2,671,924,367
2. 단기금융상품	3,333,342,028	3,299,634,606
3. 미수금	507,520	186,040
4. 선납세금	9,291,370	14,829,510
II. 비유동자산	-	-
(1) 유형자산	-	-
1. 차량운반구	66,101,580	66,101,580
감가상각누계액	(58,044,218)	(51,425,151)
자산취득보조금	(8,057,362)	(14,676,429)
2. 비품	2,242,645,560	1,822,065,690
감가상가누계액	(1,409,511,538)	(965,231,251)
자산취득보조금	(833,134,022)	(856,834,439)
(2) 기타비유동자산	-	-
1. 기타보증금	152,789,000	-
자산취득보조금	(152,789,000)	-
자 산 총 계	6,422,112,088	5,986,574,523
부 채		
I. 유동부채	3,080,463,260	2,674,017,262
1. 미지급금	138,670	-
2. 예수금	99,832,012	35,975,866
3. 미지급비용	236,493,750	129,678,078
4. 사업운영비선수금	2,268,235,061	2,208,870,792
5. 민간위탁예수금	372,605,897	128,806,648
6. 미지급반환금	28,972,886	53,161,499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	74,184,984	117,524,379
II. 비유동부채	8,306,800	13,434,960
1. 퇴직급여충당부채	8,306,800	13,434,960
부 채 총 계	3,088,770,060	2,687,452,222
자 본		
I. 자본금	3,333,342,028	3,299,122,301
1. 기본재산	3,333,342,028	3,299,122,301
II. 이익잉여금	-	-

과 목	제 5(당) 기		제 4(전) 기	
자 본 총 계		3,333,342,028		3,299,122,301
부 채 및 자 본 총 계		6,422,112,088		5,986,574,523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운 영 성 과 표

제5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4기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단위 : 원)

과 목	제 5(당) 기	제 4(전) 기
I. 사업수익	27,394,543,652	20,518,542,289
1. 수원시출연금수입	15,055,199,627	15,192,024,208
2. 민간위탁사업수입	12,339,344,025	5,326,518,081
II. 사업비용	27,394,543,652	20,518,542,289
1. 직원급여	5,184,165,480	4,812,857,880
2. 퇴직급여	418,393,880	385,561,310
3. 여비교통비	107,733,912	111,168,276
4. 시설비	205,310,790	419,950,900
5. 민간경상보조비	143,353,281	339,144,255
6. 민간행사보조비	1,775,866,123	1,116,619,167
7. 도서인쇄비	231,500	845,710
8. 업무추진비	87,712,980	70,318,670
9. 공공운영비	1,271,373,600	1,166,441,914
10. 행사운영비	2,096,712,910	3,564,310,620
11. 자산취득비	573,368,870	514,083,380
12. 사무관리비	1,600,062,761	1,349,407,396
13. 기타보상금	556,277,870	565,020,860
14. 전산개발비	144,902,480	30,210,590
15. 포상금	194,298,300	4,200,000
16. 보험부담금	422,753,260	421,747,280
17. 국고보조금	296,233,700	48,183,680
18. 행사실비보상금	192,675,000	240,146,000
19. 연구용역비	80,006,630	79,990,000
20. 민간위탁(문화관광해설사)	296,207,600	191,682,000
21. 민간위탁(화성행궁상설한마당)	63,811,040	81,492,800
22. 보조금(관광안내판)	-	33,842,170
23. 기부금(수원화성국제연극제)	-	14,251,000
24. 기부금(수원화성문화제)	189,121,100	27,051,100
25. 민간위탁(여행박람회)	209,740,300	122,960,564
26. 민간위탁(전통식생활체험)	514,145,803	769,047,360
27. 민간위탁(예절교육관)	248,037,140	475,258,010
28. 민간위탁(수원시립공연단)	2,142,703,300	1,308,423,560
29. 민간위탁(행궁동벽화마을)	-	136,202,500
30. 보조금(거리로나온예술)	17,376,000	19,883,000
31. 순수기부금	2,000,000	1,390,290

과 목	제 5(당) 기		제 4(전) 기	
32. 민간위탁(문화예술발전)	69,528,800		144,373,590	
33. 민간위탁(어린이도서관)	1,995,103,670		1,862,651,670	
34. 민간위탁(우리동네예술)	81,386,911		67,324,787	
35. 보조금(한문연)	91,094,000		22,500,000	
36. 대행사업비	6,122,854,661		-	
III. 사업이익		-		-
VI. 사업외수익		59,355,474		96,519,089
1. 이자수익	59,355,474		96,519,089	
V. 사업외비용		59,355,474		96,519,089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59,355,474		96,519,089	
VI.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
VII. 법인세등		-		-
VIII. 당기순이익		-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 5 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4 기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이 익 잉여금	총 계
2015.01.01 (전기초)	2,124,191,185	-	2,124,191,185
기본재산출연	1,174,931,116	-	1,174,931,116
2015.12.31 (전기말)	3,299,122,301	-	3,299,122,301
2016.01.10 (당기초)	3,299,122,301	-	3,299,122,301
기본재산출연	34,219,727	-	34,219,727
2016.12.31 (당기말)	3,333,342,028	-	3,333,342,028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금흐름표

제 5 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 4 기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단위 : 원)

과 목	제 5(당) 기	제 4(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06,534,498	(1,256,594,898)
1. 당기순이익	-	-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의 가산	67,662,274	109,954,049
가. 퇴직급여충당부채의전입	8,306,800	13,434,960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59,355,474	96,519,089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102,694,869)	(146,352,417)
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대체	102,694,869	146,352,417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변동	441,567,093	(1,220,196,530)
가. 미수금의감소(증가)	(321,480)	9,317,545
나. 선납세금의감소(증가)	5,538,140	6,175,780
다. 미지급금의증가(감소)	138,670	(508,521,361)
라. 예수금의증가(감소)	63,856,146	16,933,616
마. 미지급비용의증가(감소)	106,815,672	(24,565,827)
바. 사업운영비선수금의증가(감소)	59,364,269	(391,813,727)
사. 민간위탁예수금의증가(감소)	243,799,249	(226,216,908)
아. 미지급반환금의증가(감소)	(24,188,613)	(21,144,708)
자. 퇴직금의지급	(13,434,960)	(80,360,94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3,707,422)	(1,174,980,758)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3,707,422)	(1,174,980,758)
가. 단기금융상품의증가	33,707,422	1,174,980,758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4,219,727	1,174,931,116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4,219,727	1,174,931,116
가. 기본재산의증가	34,219,727	1,174,931,116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가. 기본재산의 감소	-	-
IV. 현금의증가(감소)	407,046,803	(1,256,644,540)
V. 기초의현금	2,671,924,367	3,928,568,907
VI. 기말의현금	3,078,971,170	2,671,924,367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주석

2016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 1. 재단의 개요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수원시의 역사와 전통의 계승,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정책사업과 관광활성화사업, 문화예술의 창작·보급사업 등을 전개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복지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3046호(2011.8.5.제정)를 통하여 재단의 설립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재단의 설립: 2011년 12월 07일

(2)재단의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남창동)

(3)이사장 : 염 태 영

(4)출자상황: 수원문화재단 설치 및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가 10,000,000원을 전액 출연하여 설립하였으며, 이 후 추가전입을 통하여 당기말 현재 기본재산은 3,333,342,028원입니다.

### (5)주요목적사업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시행
- \*수원화성 시설, 문화공간의 운영·관리 및 수익사업
-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연, 관광안내, 콘텐츠 개발
-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지원 및 국내외문화예술교류

-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존
- \*수원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의 문화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사업

## 2. 주요회계처리방침

재단은 재단의 재무회계규정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2-1. 운영성과표의 작성기준

운영성과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재단은 사업수익에서 사업비용을 차감하여 사업이익을 계산하고, 이에 사업외손익을 가감하여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 2-2. 수익의 인식

재단은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하고 있으며,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수익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 2-3.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재단은 통화 및 타인발행 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리고 큰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며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또는 상환기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2-4. 금융상품

재단은 단기적 자금운용의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을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을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2-5. 유형자산

가. 유형자산은 자산의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에 동 자산을 사용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는 합리적으로 추정한 내용연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하며, 산정된 감가상각누계액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목	내용연수	상각방법
차량운반구	5년	정율법
비품	5년	정율법

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생산능력의 증대, 내용연수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등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고,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재단은 유형자산을 보조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자산에 계상하는 동시에 자산취득비와 자산취득보조금으로 동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보조금은 당해 취득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재무상태에 표시하며, 감가상각시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2-6. 퇴직급여

재단은 재무상태표일 현재 1년이상 근속한 임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년미만 근속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연봉의 1/12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동액을 별도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 2-7.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재단은 법인세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받기 위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준비금 상당액을 수원시 출연금수입에 직접계상하고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설정하는 것이므로 이 사회의 재무제표확정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나, 이익잉여금의 처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결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금액	은행명	비고
보통예금	2,120,799,373	중소기업은행	2016출연금
보통예금	201,778,480	중소기업은행	BC결제
보통예금	108,199,812	중소기업은행	세입(예수금)
보통예금	7,960,370	중소기업은행	세입(원천세)
보통예금	24,108	중소기업은행	문화관광해설
보통예금	8,306,800	중소기업은행	퇴직급여
보통예금	251,432	중소기업은행	행사보조이자
보통예금	49,293,665	중소기업은행	이자수입
보통예금	190,066,330	중소기업은행	어린이도서관
보통예금	170,046	중소기업은행	사랑채예약금
보통예금	100,000	중소기업은행	월주차보증료
보통예금	5,934,579	중소기업은행	순수기부금
보통예금	7,175,000	중소기업은행	입찰보증금
보통예금	385,500	중소기업은행	복지제도정산
보통예금	20,530,210	중소기업은행	대관료수입
보통예금	147,435,688	중소기업은행	2015출연금

보통예금	77,791,599	중소기업은행	수원시립공연단
보통예금	1,717,635	신한은행	꼬마작곡가
보통예금	34,362,010	중소기업은행	조건부기부금
보통예금	951,080	중소기업은행	문화재보호기금운영
보통예금	3,352,560	중소기업은행	경영BC
보통예금	4,021,670	중소기업은행	문화BC
보통예금	10,901,700	중소기업은행	화성마케팅BC
보통예금	9,516,660	중소기업은행	공연BC
보통예금	1,152,850	중소기업은행	정책BC
보통예금	4,808,380	중소기업은행	전통BC
보통예금	57,093,684	신한은행	글로벌명품시장
보통예금	2,230,668	신한은행	K-sale페스타
보통예금	2,036,707	신한은행	꿈다락토요문화
보통예금	622,574	신한은행	글로벌명품시장BC
합계	3,078,971,170		

#### 4. 단기금융상품

당기말 현재 단기금융상품은 기본재산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금액	은행명	비고
보통예금	3,333,342,028	중소기업은행	기본재산
합계	3,333,342,028		

#### 5.선납세금

선납세금은 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선납분으로 차기 사업연도에 환급 받을 예정입니다.

## 6.사업운영비선수금

사업운영비선수금은 수원시로 부터 사업운영을 위해 지원받은 금액 중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수원시에 반납하거나 차기 사업연도의 예산에 충당될 금액입니다.

## 7.민간위탁예수금

민간위탁예수금은 수원시, 기업, 민간단체 등으로 부터 특정행사를 위해 지원받은 금액 중 집행중이거나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서 지원처에 반납하거나 차기연도의 예산에 충당될 금액입니다.

## 8.미지급반환금

미지급반환금은 수원시나 지원처에 반환이 확정된 금액 중 재무상태표일 현재 미반환된 금액입니다.

## 9.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설정하는 것이므로 이사회의 재무제표확정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단은 이자수익을 향후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29조에 의거 고유목적사업준비금(결산조정)을 설정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 전출시 수원시출연금수입에 직접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위배되나 금액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로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 10.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당기 및 전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5(당) 기 처분예정일	2016년 01월 0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2017년 3월 15일	제 4(전) 기 처분확정일	2015년 01월 0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2016년 3월 15일
과목	제 5(당) 기	제 4(전) 기	제 4(전)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	-
1. 당기순이익	-		-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11. 법인세비용

재단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법인세등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을 비용처리함으로써 당기와 전기에 부담할 법인세등은 없습니다.

## 12.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위수탁 협약

수원시사무 민간위탁조례 제9조,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재단사업) 및 제21조(권한위탁)의 규정에 의거, 재단은 수원시장과 수원화성 및 수원문화예술과 관련된사무와 시설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